

## 1. 개정이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실무소위원회에서 인구유발효과 분석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 위원회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실무소위원회는 실무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의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실무소위원회 구성에 전문기관을 포함시킬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명문화 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실무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기존 일부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의 구성에 전문기관을 포함시킬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수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다 심도있게 검토·심의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처리하기”를 “제3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입지적정성 및 인구유발효과 등을 사전검토하기”로, “실무위원으로”를 “실무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으로”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실무소위원회) 실무소위원회는 <u>보다 심도있게 검토·심의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제12조(실무소위원회) ----- ---- <u>제3조(의안의 사전검토)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입지적 정성 및 인구유발효과 등을 사전검토하기</u> ----- ----- <u>실무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으로</u> -----.